

학문계열평가의 방향과 과제*

- 의학과 평가인정제 모델을 중심으로 -

맹 광 호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I. 머리말

대학종합평가가 개설학과 또는 학문분야 형태나 수에 관계없이 대학전체를 단위로 해서 평가하는 것인데 반해, 학문계열평가는 대학내 특정학과 또는 학문계열을 단위로해서 평가하는 대학평가의 한 유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학문계열평가는 본격적으로 대학평가를 시작하게 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3년간 주로 단일학과들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학과평가의 성격으로 시행되었으나, 1995년 이후부터는 같은 계열의 학과들을 묶어서 평가하는 학문계열평가로 그 형태가 바뀌어 왔다.

이런 학문의 계열화는 우리나라 전국 4년제 대학에 개설된 학과의 유형이 1000개도 넘는

다는 점에서 학과중심평가가 갖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정부의 학부제 권장정책이나 유사학과들을 통합함으로써 대학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각 대학의 노력에도 부합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92년 물리학과(53개 대학)와 전자공학과(45개 대학)에 대한 학과평가를 실시한 이래 1993년에 화학과(64개 대학)와 기계공학과(33개 대학), 1994년에 생물계열학과(56개 대학)와 화학공학계열학과(34개 대학), 1995년에 경영학 계열 무역, 회계, 경영학과(94개 대학), 1996년에 의학계열 의학과(31개 대학), 치의학과(10개 대학), 한의학과(9개 대학), 그리고 1997년 간호학과(23개 대학)와 약학계열학과(20개 대학) 등 총 10개 계열학과 472개 대학에 걸친 제1주기 평가를 마친 상태다.

이들 평가대상 학과나 학문계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에서의 제1주기 학문계열 평가는 ① 국제 경쟁력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학문계

* 이 논문은 1999년 8월 31일 건국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21세기 대학평가의 방향과 과제」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주제 논문으로 발표된 것임.

열이나 학과, ② 기초과학이나 기초학문과 관련이 있는 학과, ③ 전문인 양성이나 자격증과 관련된 학문분야, ④ 첨단과학분야와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할 분야를 우선 평가대상으로 하고있다(이현청, 1997). 이렇게 실시된 우리나라에서의 제1주기 학문계열 평가는 여러 가지 면에서 관련 대학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를 계기로 해당학과 또는 학문계열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인력 확충은 물론, 교육과정이나 교수들의 연구실적 향상 등 전반적인 대학교육의 수월성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것이다.

최근 대학교육협의회가 각 학문계열교수 3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주기 학과 및 학문계열 평가의 성과에 대한 설문조사(정우현 외, 1999)에서 응답자의 74.8%가 교육시설의 개선을, 68.2%와 64.2%가 각각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개선을, 그리고 58.6%와 56.4%가 교육확보 및 교육재정의 확충에 그간의 학문계열평가가 기여했다는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다.

이런 전반적인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행 학문계열 평가제도는 처음부터 진정한 의미의 평가인정제로 출발을 했다고 볼 수가 없고,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좀더 전향적인 평가인정제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는 장차 전세계 모든 대학들이 더욱더 치열한 경쟁 속에 놓이게 될 21세기의 새로운 사회를 맞아가 어렵다는 견해의 목소리도 만만치가 않다. 다행히, 일부 전문분야 학문계열에서는 자체적인 평가인정제를 개발하여 이미 시범

평가 활동에까지 들어갔고, 최근 정우현 등(1999)은 대교협의 정책연구과제로 우리나라 학과평가 개선방안에 관한 대대적인 연구를 시행하고 그 최종보고서를 마련 중에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제1기 학문계열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동안의 우리나라 학문계열평가 인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노력과 의견들을 참고로 해서 2000년도 이후의 우리나라 학문계열 평가인정제가 좀더 선진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제1기 학과 및 학문계열평가의 문제점

1992년 이후 97년까지 6년에 걸쳐 시행된 제1주기 학과 및 학문계열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정리하면 대략 다음 4가지로 요약이 된다.

첫째는 평가주체와 관련한 문제이고, 둘째는 평가도구인 평가기준의 적절성과 관련한 문제이며, 셋째는 평가자들의 전문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넷째는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우선 평가주체와 관련된 문제는, 제1기 우리나라 학과 및 학문계열평가가 형식상 전국 총학장들의 모임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제도여서 언뜻 대학들 스스로 실시하는 평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평가대상 학문계열 선정에서부터 평가항목 선정, 그리고 평가결과 발표에까지 거의 전과정에 있어서 교

육부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교육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대교협이 학문계열 평가인정제가 정부 내지는 준정부적 평가제도로 운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이로 인한 장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외국의 예로보나, 대학 평가의 기본정신이 이를 통한 대학 스스로의 발전 모색이고, 따라서 이 일이 대학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정부주도의 평가는 어떻게든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인 것이다(맹광호, 1997; 이현청, 1999).

둘째는 평가도구로서의 평가항목이나 평가 기준의 적절성 문제다. 이에 관해서는 가령 평가문항의 수가 너무 많다든지, 내용이 중복되는 문항들이 있다든지, 기준설명이 모호하다든지 하는 다분히 기술적인 문제들도 없지 않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학문계열평가가 정량적인 부분에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문항별 기준을 척도화, 점수화함으로써 상대평가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의 제1기 평가가 일단 해당학과 또는 학문계열의 교육여건과 내용을 최소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데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할 수도 있는 일이지만 역시 다음 21세기 대학평가에서는 반드시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인 것이다.

셋째는 평가자들의 전문성과 평가자간 평가능력 차이 문제다.

어떤 형태의 평가든지 평가할 것을 제대로 평가하는지에 관한 평가도구의 타당도도 중요하지만 이들 평가도구를 활용하는 평가자들의 전문성과 함께 평가자간의 평가능력 차이를 최소화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제1기 학과 및 학문계열평가의 경우 이점에 있어서 적잖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앞서 언급한 대교협의 설문조사에서 대학 자체평가 연구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가 긍정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약간 넘는 53.6% 였다든지, 현지 방문평가 교수들의 전문성이 만족할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6%에 불과했던 것이 그 좋은 예다.

이는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교수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기간이 부족했던 점에 큰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이유로는 지난번 제1주기 평가가 상대평가였던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평가자들 입장에서 보면 평가대상 대학의 학과나 학문계열이 곧 평가자가 속한 대학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공정한 평가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는 평가결과 활용과 관련한 문제다.

제1주기 학문계열평가의 표면상 목적은 개별대학 학과 또는 학문계열 평가를 통한 인정여부 결정 및 발표였다. 이를 통해서 해당대학 학생들이나 사회일반인들로 하여금 평가대상대학 학과나 학문계열의 교육여건과 교육내용 수준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수

준인지 여부를 알려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적인 평가결과 발표는 대학을 서열화하는 것이었다. 물론, 내용적으로는 일단 평가총점의 90% 이상을 취득한 대학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일정 비율을 우수 또는 최우수 대학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이들 대학이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대학별 취득점수를 바탕으로 우수 또는 최우수를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대학별 평가인정여부 결정과는 거리가 먼 결과 발표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평가결과의 활용이다.

일단 상대평가 개념에 의해 우수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으로 구분 발표를 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결과활용이 있어야 한다.

대교협으로서는 우수대학에 대해 ‘보상적 차원의 지원’을, 그렇지 못한 대학에 대해서는 ‘조성적 차원의 지원’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지만 전혀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물론, 정부로서도 전국 모든 대학 모든 학과를 일시적으로 평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대상 학과나 학문계열에 대해서만 이런 차등지원을 해줄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발적으로 평가에 참여한 대학들로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지원이 따르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수 없는 것이다(염영일, 1997).

III. 새로운 학문계열 평가제도 개발을 위한 모델검토

1. 미국의 학문계열 평가제도

학문계열 평가제도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미국의 제도를 살펴보는 일은 거의 불가피한 일이다. 그것은 우리나라 학문계열 평가제도가 미국의 소위 전문영역 학문계열평가 인정제도(Specialized or Professional Accreditation)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이화국, 1997), 무엇보다 현행 미국의 학문계열 평가제도의 장단점에 관한 논의 속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처음 학문계열 평가제도가 생긴 것은 1910년의 일이다. 이해 미국의학협회가 주관한 미국내 의과대학 평가가 그것인데, 플렉스너 리포트(Flexner Report)라고 불리는 이 미국 의과대학 평가결과에 의해서 당시 미국내 전체 의과대학 가운데 수준이하의 대학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된 일은 두고두고 기록에 남는 사건이 되고 있다.

이후로 치의학(1918), 법학(1923), 공학(1936), 약학(1940) 분야 평가가 이루어졌고, 지금은 면허증이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약 70개 전문분야에서 평가인정제를 운영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같은 미국의 전문영역평가 인정제는 우리나라의 학문영역평가 인정제도와 비교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미국의 경우 학문계열평가의 주체는 정부나 정부관련기관이 아닌 해당 학문분야 학회나 전문가 협회가 중심이 된 자율평가기

구라는 점이다.

예컨대, 의학은 미국 의학협회와 의과대학 협회가 중심이 된 LCME(Liaison Committee on Medical Education)라는 독립된 평가기구가 평가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법학은 법학협회, 사범계대학은 전국교사협의회 등이 독립 평가기구를 가지고 평가와 인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이들 70개 독립 전문영역 평가기구들은 이들의 평가능력을 인정해주는 전국 대학총장 기구인 CHEA(Council for Higher Education Accreditation)의 지도감독을 받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연방이나 주정부가 이런 평가 인정제 시행에 관한 법령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분야 면허나 자격을 관리하는 주정부가 이 인정평가를 받은 교육기관의 과정이수자에게만 직접 면허증과 자격증을 교부한다든지 관련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을 줌으로써 이 제도의 근본 목적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이화국, 1997).

평가대상 대학들이 전문분야별 학문평가 인정기구에 매년 적잖은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이 제도를 통한 평가결과의 사회적 인정과 이에 대한 공신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둘째, 미국의 경우 평가가 대상학과나 계열 학문을 개설한 대학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즉, 해마다 평가대학 학문계열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해당대학모두가 예외없이 참여해야하는 우리 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평가를 거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이 언제나 평가 주체인 해당 학문계열 평가기구에 신청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다.

셋째, 대부분 미국 전문영역 학문계열 평가기구의 평가기준이 정성적이라는 점이다.

교육평가는 어떤 형태든지 기본적으로 투입-산출(Input-Output) 모형을 따라 이루어진다. 그것은 교육기관의 수월성이 대체로 교육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시설·설비 등과 이를 통한 교육과정 및 구성원들의 교육성취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며, 따라서 교육기관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이 두가지 요인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입요소가 대체로 정량적인데 반해 산출요소는 정성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가기준이 정성적이란 말은 그만큼 평가의 내용이 투입요소보다는 산출요소에 더 치중되어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이것이 투입요소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학문계열 평가의 중심개념이 각 기관의 교육목표 달성여부 판정에 있기 때문에 이 경우 투입요소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당연히 취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기본 투입요소마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교육기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1기 평가에서 우선 이 부분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넷째, 미국의 학문계열 평가는 그 결과가 인정 여부로만 발표가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미국에서의 학문계열 평가가 처음

부터 주로 면허증이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전문직 교육과정의 질적수준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해당 학과나 교육과정을 가진 전국의 대학이 동시에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대학이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평가를 받는 제도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평가대상 대학이 서열화될 수도 없으며 이일은 미국에서의 학문계열 평가인정제도의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2. 국내 의학 및 공학분야에서의 자체 평가인정제 도입 노력

앞서 살펴본 우리나라 학문계열 평가의 문제점들은 제1기 학문계열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제기되어왔다. 예컨대, 그동안 우리의 학문계열평가가 주로 투입요소 위주의 정량적 평가였다든지, 대학을 서열화하는 상대적 평가였다든지, 이런 일로 인해 생길 수밖에 없었던 평가의 공정성 시비문제 등이 그것인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제1기 학문계열 평가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인정평가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이것은 결국 정부가 평가주체인데서 생기는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일부 학문계열이 이같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해당분야 학과나 학문계열의 전반적 교육의 질과 수준향상을 위한 평가인정제로 이를 발전시켜 보려는 노력을 시작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의학과 공학분야에서의 자체평가인정제 도입시도다.

의학의 경우, 1996년 당시 전국 40개 의과

대학 가운데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는 31개의 과대학이 학과평가를 받았는데 당시 의료계는 시설과 인력이 크게 부족한 상태에서 새로 의과대학들이 신설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신설의대를 제외시킨 당시의 평가가 오히려 이들에게 면죄부를 준 결과가 된 것에 대해 더욱 불만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평가 다음해인 1977년부터 의료계에서는 미국과 같은 형태의 평가인정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기 시작했고, 그해 가을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와 한국교육학회의 공동 학술세미나에서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 도입문제를 정식거론하게 된 것이다. 이를 계기로 1997년 12월 20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한국교육학회의 등 전국 9개 의과교육 관련단체들의 모임인 한국교육학회의회에서 정식으로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 위원회를 발족하고,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어 그동안 수십차례 자체모임과 세미나, 워크숍 등을 거쳐 제도전반에 관한 사항은 물론, 실제 평가를 위한 평가항목과 기준개발에 노력해 온 것이다. 이에앞서,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하고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 연구』 보고서(맹광호 외, 1998)를 완성한바 있으며, 이 연구결과는 의과대학 인정평가 실무위원회의 기준개발 작업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런 노력을 거쳐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 위원회는 금년 7월 우선 1996년 평가당시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지 않던 1개 의과대학과 그 동안 신설된 9개 의대를 합쳐 총 10

개 의과대학에 대한 평가를 시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의과대학 자체 인정 평가의 경우, 1996년도 평가때와 달리 평가문항을 총 93개에서 50개로 크게 줄였으며, 특히 이중 16개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정해서 모든 대학이 이 항목을 반드시 기준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실제 평가에서 문항별 기준의 척도화를 배제함으로써 대학간 우열개념을 제거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이번 평가에서는 인정여부 결과발표를 유보하고 평가 영역별로 그 대학의 장단점을 분석 평가하여 대상 대학의 발전을 위한 조언을 주는 수준의 평가 결과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대학별 신청에 따라 정식평가를 실시하고 인정여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 위원회, 1999).

총 15명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 위원회에는 교육부와 복지부 국장급인사와 언론계, 소비자 단체인사 등을 고르게 포함시키고 있기는 하나 아직 의료계의 이런 노력이 공적인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들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필요한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시작한 순조롭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재정문제를 포함해서 평가전문가 양성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대상 의과대학들의 자발적인 참여여부 등 무슨 일이나 사업초기에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적지 않지만 결국 이 일이 정부로부터나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름대로 최선

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1992년과 93년, 각각 전자공학과와 기계공학과에 대한 학과평가를 받은 공학분야에서도 다른 기타 공학분야를 포함하여 한 단계 수준높은 평가인정제도로 이를 발전시키기 위해 미국의 ABET(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and Technology)를 모델로한 한국공학교육인증원(Accreditation Board for Engineering Education of Korea, ABEEK) 설립을 목표로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다(한국공학교육인증원 설립실무위원회, 1999).

즉, 1997년 9월 이후 약 1년간 공학한림원과 공학기술학회가 주관이 되어 공학계내 여론을 수렴하고 미국 ABET 활동을 분석 검토하는 작업을 마친 다음 1998년 9월 이후 12월 사이에 한국공학교육인증원(공학계에서는 영어의 accreditation을 ‘인증’으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음) 설립준비위원회를 정식 구성한 바 있다. 그리고 드디어 지난 7월 12일에는 전국 공과대학 학장협의회와 함께 제2차 공청회를 열고 인증규정을 포함한 인증원 운영세부계획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지금은 2000년 시범인증 평가실시를 위한 전문가양성, 예산확보 등 본격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다.

공학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인증제도 또한 외형적인 교육지표 보다는 교육 프로그램 내용의 충실도를 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인증여부만 결정할 뿐 등급이나 서열화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있으며 특히 평가내용 중에 공학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과 내용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이

들의 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절대평가 형태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학과 공학분야에서의 이같은 자체 인정 내지 인증평가제도 도입 노력과 시도는 우선 앞으로 다른 전문분야 학과들의 자체인정평가 노력을 크게 자극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적어도 전문영역 학문계열에서의 자체 평가인정제도가 활성화되고 대상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자면 무엇보다 이들 자체 평가인정 기구들의 평가 결과가 공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지 않으면 안된다.

IV. 새로운 학문계열 평가제도의 방향과 과제

1. 학문계열 평가인정제의 목적 재정립

제1기 학문계열평가를 위해서 대교협이 매년 발간한바 있는 학과평가 편람에 보면, 학과평가 인정제의 목적을 ‘개별학과 교육의 수월성, 효율성, 책무성, 자율성, 협동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재정의 확충을 통하여 학과를 발전시키는데 있다’라고 기술하고 이들 각각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설명을 곁들이고 있다.

이것은 1980년대 말부터 대교협이 본격적인 대학평가인정제 도입문제를 연구하면서 당시 미국의 전국적인 대학평가인정 조정기구 역할을 담당했던 COPA(Council on Postsecondary Accreditation)에서 정한 대학평가인정제의 목적을 거의 그대로 번역해서 사용한 것이다(김신복 외, 1990; 대교협, 1995).

그러나, 앞으로 학문계열평가를 기관평가 차원의 대학종합평가와 차별화하고 학문계열 특성에 따라 좀더 다양하게 이를 운영하기로 한다고 할 때 그 목적 또한 대학평가의 일반적 목적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우현 등(1999)은 발전적 학문계열 평가인정제 방안에 관한 그들의 연구에서 학문계열 평가인정제의 목적을 「학부(학과)의 교육과 연구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간단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관련 학생, 교수, 학과, 대학, 대교협, 학계, 사회, 국가, 그리고 외국 대학 등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기능하게 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예컨대, 이 학문계열평가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학문계열을 선택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이 보장된 대학에서 교육받도록 선택의 기회를 주게 한다든지, 교수들에게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받고 기본적인 교육과 연구의 여건을 구비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등 학문계열 평가의 모든 수혜자들에게 학문계열평가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하여 이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평가대상 학과나 학문계열이 해당 대학교 전체의 명성이나 종합대학평가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 독립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학문계열 평가인정제의 목적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2. 평가대상 학문계열의 선정

새로운 학문계열 평가인정제 구축에서 가

장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가 평가 대상학과나 학문계열을 선정하는 일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미국에서는 전문영역별 학회나 협회, 그리고 관련단체협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자격증이나 면허증이 부여되는 학문계열, 예컨대 의사, 변호사, 교사양성학과 등을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주로 이·공계 학과를 중심으로 학과 평가를 실시해 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과 달리 일단 대학에 개설된 모든학과를 평가대상으로 삼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4년제 대학내 1000개가 넘는 학과의 종류를 크게 계열화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지만, 모든 학교, 모든 학문계열을 평가 인정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미국처럼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필요로 하는 학문계열을 포함해서 일부 국제경쟁력과 관련된 이·공계 응용학문계열과 기초과학분야, 그리고 문화관련 학문계열 등을 학문계열평가 대상학과나 학문계열로 선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3. 평가주체(평가인정기구)의 결정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학문계열평가는 대교협이 주관해왔다.

형식상 대교협은 전국 4년제 이상 대학 총·학장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민간자율기구처럼 보이고, 따라서 대교협이 주관하고 있는 학문계열평가가 대학 자율적인 활동처럼 보

이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대학평가를 위한 적잖은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따라서 매년 실시되는 대학평가에 관한 거의 모든 의사결정이 실제로는 교육부의 의견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평가항목별 기준을 계량화, 척도화 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대상 대학을 서열화해서 발표함으로써 우리의 학문계열평가가 진정한 의미의 인정을 위한 평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학문계열평가를 모두 대교협이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학과나 학문계열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평가관리 운영상 효율성에 적잖은 문제가 있는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교협은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운영에 좀더 치중하고 학문계열 평가에 대해서는 대상학과나 학문계열의 성격에 맞추어 평가주체를 다양화해갈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일부 이·공계 학과나 기초과학분야 학문계열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대교협이 직접평가와 인정여부를 결정하되, 가령 졸업후에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는 의학이나 법학, 공학 등 전문분야 학문계열에 대해서는 관련협회나 학회 등이 중심이 된 자체 평가인정기구가 대상학과나 학문계열에 대한 평가인정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대교협은 이들 전문 학문분야별 평가인정기구를 승인해주는 미국의 CHEA와 같은 기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대학교육협의회가

그 동안 대학평가를 주도해옴으로써 대학평가에 관한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 따라서 학문계열별로 자체평가 인정기구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거의 반드시 대교협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처럼 학문계열별 자체 평가인정기구가 난립하는 일은 생길 수 없고, 따라서 대교협은 미국의 CHEA 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학문계열 평가인정제 종합 운영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4. 평가전문인력의 확보 및 훈련

새로운 학문계열 평가인정제도의 정착을 위한 또하나의 과제는 평가전문인력의 확보와 교육문제이다.

어떤 형태의 평가인정제도든지 그것이 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에 관한 높은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 신뢰성은 전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전문성과 평가도구인 평가 문항 및 그 문항별 기준의 타당성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 학과평가에 관여해서 평가문항과 항목별 평가척도를 개발하고 서면평가나 현지방문 평가를 수행한 사람들이 모두 해당분야 전문 교수들이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곧 평가전문가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실제 평가문항과 평가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서면이나 현지방문 평가에 임하기 전에도 논의를 거치고 필요한 교육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교육만으로는 전문분야 학문계열 평가의 전문성과 평가도구의 높은 객관성을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다. 따라서 새로운 학문계열 평가인정제가 우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당분야 평가 기구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실제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서면 및 현지방문 평가에 참여할 인력의 전문화가 절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해당 학문계열 평가를 사실상 기획하고 추진해 갈 능력있는 전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전문화에 노력해야 한다. 물론, 이들 학문계열 평가기구의 실무위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교협 평가관리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 또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5. 타당성있는 평가인정기준의 개발

새로운 학문계열 평가인정제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타당성 있는 평가인정기준의 개발이다.

이 일이 학문계열별 평가인정제의 철학이나 평가에 관여하는 전문인력의 능력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계열 평가인정기준은 대학종합평가 인정기준에서와 동일하게 일단 평가대상 내용을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시설·설비, 행정·재정영역 등 크게 6개 영역으로 정하고 이를 다시 부문과 항목으로 세분한 다음 영역별, 부문별, 그리고 항목별 평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때 영역과 부

분평가 기준은 서술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항목별 평가기준은 그 수준의 적절성 정도를 5점척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점수화, 척도화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평가대상 영역을 일단 6개로 구분하는 것은 전형적인 교육의 투입-산출 요소모형에 따른 것으로 큰 무리가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하나, 그렇다고 모든 학과와 학문계열이 일률적으로 반드시 여기에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내용적으로는 결국 6개 영역이 모두 포함되기는 하나 학문계열 특성에 따라 영역별 내용을 다시 세분화하거나 서로 합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대학평가인정제의 평가기준과 미국 기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기준이 완전히 정성적인데 반해 한국의 기준은 1/3정도가 정량적이라는 점이다. 또한 미국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나 한국의 기준은 현 대학 실태의 중간정도의 유지를 평가인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도 가능한한 미국의 평가기준과 같이 대학과 학과가 제시하는 이념과 목적 및 그 달성 가능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기준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항목별 기준의 척도화, 점수화는 배제하고 자세한 항목별 기준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전문영역 평가를 위한 항목설정에 있어서 일부 항목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역시 자격이나 면허와 관련된 학문계열의 경우 대상대학이 기본적으로 만족시켜야 할 내용이 있다고 보기 때문

이다. 미국의 의과대학 평가인정을 위한 문항 기준 가운데 ‘must’와 ‘should’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필수와 권장 기준을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새로 시작한 의과대학 자체 인정평가에서 총 50개 문항중 16개 문항에 대해 필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 좋은 예다.

6. 평가사업예산의 확보

학문계열평가는 평가대상 대학이나 평가를 시행하는 평가기구 모두에게 결코 적지않은 재정적 부담이 되는 일이다. 특히 몇 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게되는 대학과 달리 매년 일정수의 대학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소 사무국을 운영해야 하는 평가기구 입장에서는 평가사업 예산확보 문제가 커다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사회가 자발적으로 개발한 미국의 평가인정제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평가인정제는 정부의 지원하에 개발되었으며,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할 때 정부의 평가사업비 지원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평가인정기구가 확대되고 특히 여러개의 학문계열 평가인정기구가 설립되면 정부는 재정지원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 것이다. 전문 프로그램 평가기구는 미국에서와 같이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의 연회비와 대학의 방문평가비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지원 방식에 의해 부실 프로그램 평가 인정기구의 난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정부가 자격증 발급 전제조건으로 프로

그램 평가인정제를 활용한다면 프로그램 평가인정기구의 재정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그러나 역시, 우리나라의 경우 학문계열 평가인정제는 아직도 시작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따라서 이 제도가 여러 분야에 걸쳐 정착됨으로써 각 학문계열별 교육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하자면 정부가 상당수준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본다. 아울러 해당 전문분야 학문 계열학과 출신들로 구성되는 전문인 단체, 예컨대 의사협회나 간호사협회, 그리고 변호사협회 등이 평가경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한 일일 것이다.

7. 평가인정제를 위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현행 대학 평가인정제는 1982년에 제정된 한국대학교육협회의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이 법 18조에는 「한국대학교육협회는 대학교육과 대학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주기적으로 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체없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대학평가인정제에 의한 대학 및 학과 평가의 영향이 점차 확대되고, 대학사회의 평가인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제 단순한 한 줄의 법규만으로는 이 평가제도를 운용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더욱이 대학평가인정제가 전문대학까지 확대되어야 하고, 다양한 전문분야 학문계열의 평가인

정 기구가 등장되면 대교협법의 규정만으로 평가인정제를 운용하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좀더 발전적인 대학평가인정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칭 <대학평가인정법>을 별도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대학평가인정법에는 평가인정의 정의, 평가인정제 평가의 형태와 평가기구, 그리고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적, 재정적 여건 조성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대학평가인정법에는 대교협의 대학평가인정위원회를 미국의 CHEA와 유사한 평가인정기구의 승인기구로 확대 개편하여 각종 학문계열 평가인정기구를 승인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교협의 평가지원부도 이 새로운 대학평가인정제의 최상 기구의 승인을 받아 회원 대학에 대한 종합평가와 독립된 학문계열 평가인정기구를 갖추지 못한 학문분야에 대한 학문계열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평가결과의 효과적인 활용

끝으로, 새로운 학문계열 평가인정제의 성공여부는 그 결과 활용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와도 불가분의 관련을 맺는다.

우선 평가대상 대학의 학과 또는 학문계열 평가결과의 인정여부는 그 사실이 해당대학이나 평가인정기구에 의해 널리 사회에 알려짐으로써 확실한 사회적 인정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앞서 학문계열 평가인정제의 목적 기술에서 밝힌바와 같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계 해당대학 특정 학과나 학문계열을 선택하도록 한다든지 관련 기업체나 전문인 사회가 그 대학 출신자에 대한 더 높은 신뢰를 갖도록 하는 등 평가인정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평가인정 결과를 정부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학 설치 기준이 매우 느슨해져 부실대학의 등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평가인정제가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 발전시키는 장치로 이용되어야 할 것이며, 각종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에 평가인정의 결과를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자에게는 의사, 약사, 건축사 등의 국가 시험에서 제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거나 가산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평가인정의 결과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정규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암기 위주의 국가시험에서 일정 점수를 취득하는 것보다 훨씬 타당하고 신뢰로운 평가준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학문계열 평가인정제가 국가자격 시험제도에 연계되지 못하고 독자적인 시험제도가 운영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시험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저하시키고 평가인정제의 정착이 저해될 것이 분명하다.

V. 맺는말

앞으로 21세기 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은 곧 그 나라 대학교육의 질적수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것은

한 나라의 산업발전은 물론 문화발전이 대학에서 배출하는 인력의 기술과 문화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당연한 이치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대학생수에 있어서 세계 제1위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하나도 없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긴 하지만, 이일은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대학교육 수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확신시켜주는 일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980년대 초반부터 대학평가인정제 도입을 위한 연구노력을 꾸준히 해왔으며, 1990년대 초부터는 본격적인 대학평가 사업을 추진해 온 것은 여간 다행스런 일이 아니다.

그 동안 120개나 되는 대학들이 종합평가 과정을 거쳐 인정을 받았고, 10개 학과계열 총 472개 학과가 학문계열 평가를 받는 동안 우리나라 대학들이 외형적으로나 내용면에서 이룩한 변화와 발전은 결코 과소평가 될 일이 아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우리의 대학 평가가 좀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으로 발전하도록 중지를 모아야할 때이다.

이 글에서는 주로 제1기 학문계열 평가인정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과 미국의 전문분야 학문계열 평가의 장점들을 고려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새로운 학문계열 평가인정제의 방향과 이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해 보았다. 여기서 제시된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나라 학문계열평가 발전에 도움이 되고,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대학의 학문계열 교육의 수월성이 크게 신장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참고 문헌

1. 김신복 외(1990). 대학평가인정제 시행방안 연구 (1)-제도방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 대교협(1995). 대학종합평가인정제 시행을 위한 대학종합평가 편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3. 맹광호(1997). 대학평가와 평가주체. *대학교육*. 제 87호. p.18-24.
4. 맹광호 외(1998). 의과대학 인정평가제도 연구. 대한의사협회.
5. 염영일(1997). 대학평가 결과활용의 개선방안. *대학교육*. 제87호. p.30-36.
6. 이현청(1997). 대학평가의 의미와 배경. *대학교육*. 제87호. p.10-17.
7. 이현청(1999). 21세기 대학평가의 접근과 활용방안. *대학교육*. 제98호. p.78-83.
8. 이화국(1997). 미국대학의 평가인정제 변천에 관한 연구. *고등교육연구*. 제9권 제2호. p.131-156.
9. 정우현 외(1999). 21세기를 대비한 학과평가 활성화 방안(인쇄중).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0.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설립실무위원회(1999).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 설립관련 제반규정초안(공청회자료).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설립실무위원회.
11. 한국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1999). 의과대학 인정평가위원회 활동보고서. 한국의과대학인정평가위원회.